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서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조남철

전화 02-3270-4395

보도자료

2024. 9. 12.(목)

제목

현직 경찰관의 성폭행 등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·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이정민)는 13년 전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,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침입한 **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A**를 금일(9. 12.) **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)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 기소하였음**

- A는 13년 전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하였으나, 영업이 종료된 노래방에 침입한 범죄 현장에 남겨진 A의 DNA 정보가 「DNA 데이터베이스」에 수록된 기존 미제사건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로소 A의 범행이 규명되었음

* 2010. 7. 「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성폭력·살인 등 중대 범죄의 ① 수형인, ② 구속 피의자, ③ 범죄 현장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(DB)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

-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**'죄에 상응하는 중형'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**

I

피고인

- A(남, 45세, 경찰청 소속 경위)

※ A는 2006.경 경찰 임용, 현재 직위 해제 상태

II

공소사실의 요지

- 2011. 7.경 피해자 ㉠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여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)]

※ 해당 죄의 당시 법정형 :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(행위시법 기준)

- 2024. 5. 13. 영업이 종료된 피해자 ㉡ 운영의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가
[건조물침입]

III

수사 경과

- '24. 5. 13. 서울은평서, 사건 접수(피해자 ㉡ 신고)
- '24. 6. 25. 국과수, 건조물침입 현장 DNA와 13년전 성폭력 미제 사건 DNA와 일치 사실 확인
- '24. 8. 27. 서울은평서, A 구속 송치
- '24. 9. 12. 서울서부지검 구속 기소

IV

수사 결과

가. 13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경위

○ 피해자 ㉠은 범행 당일 신고를 하였음에도 당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 미제사건으로 종결되었음

-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, 현장 증거물을 모두 가방에 넣고,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,

- 장마로 인하여 도주로 주변 CCTV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,
-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발견되었으나, 기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*에서 정보 발견되지 아니함

* 「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('10. 7.)으로 성폭력·살인 등 중대 범죄의 ① 수형인, ② 구속 피의자, ③ 범죄 현장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(DB)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

- A가 다시 노래방에 침입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DNA가 발견되었고, 국과수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, 서울은평서에서 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를 범인으로 특정함

나. 검찰 조치 및 향후 계획

- 서울서부지검은 ▲ 피고인 A와 피해자 ㉠에 대한 추가 조사, ▲ A의 휴대폰 압수 및 분석, ▲ 경찰청 운영의 지문검색시스템(AFIS) 통한 미제사건 지문 일치 여부 확인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, 현재까지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음
- 앞으로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, 향후 여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할 예정임 ☑